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단2501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2. C연립재건축주택조합

3. D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김순부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접수 제 104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된 신탁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게 2021. 5. 7. 대지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마친 대지권등기(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9261분의 59.799, 등기원인 2021. 5. 7.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조합은 위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접수 제104640호로 마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순위번호 574번)는, 피고 B가 피고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받은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3023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으로 마친 등기인바(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부동산 공유지분은 부동산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일 뿐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에 따라 피고 주택조합으로 이전된 지분(갑구 순위번호 27번)을 대상으로 마쳐졌다는 사유만으로 착오에 의한 등기로서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등기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 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말소된 신탁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대지권등기는 피고 B 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등기이므로 역시 말소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피고 B, D조합에 대한 청구는 대위청구인바, 앞서 본 대로 부동산 공유지분은 부동산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일 뿐이어서 피고 B 명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피고 주택조합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피고 B, D조합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우중

목 목

1.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임야 9261㎡ 중 갑구 순위번호 27번

9261분의 59.799 지분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서울 양천구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임야 926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9261분의 59.799. 끝

